

인천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가단2161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9. 1.

판 결 선 고 2021. 9. 8.

주 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1. 9. 접수 제99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19. 1.

22. 접수 제14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사 봉지수

별지